

I.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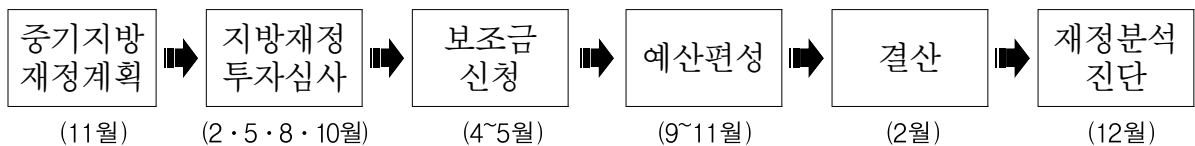
1 제도 개요

□ 개념

- 삼척시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·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,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(Rolling Plan)

□ 필요성

- 지방의 중장기 재정 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
 -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한 발전계획 수립 및 전략적 자원배분 기능 강화
 - 투자심사, 지방채 발행,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운용의 기초



- 국가와 지방간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
 -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 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

□ 근거규정 : 지방재정법 제33조 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)

□ 연혁

- (‘88년)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법제화(지방재정법)
- (‘93년)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
- (‘95년) 계획수립 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, 협의 추진
- (‘05년)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 조정 (4월 → 11월)
- (‘07년)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
- (‘15년) 중기지방재정계획연도 변경 (다음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)

2

계획수립 체계

□ 수립주체

-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,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·행정자치부 제출
-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계획을 기초로 종합계획을 수립, 국무회의 보고

□ 주요 내용

(재정목표)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·전략 등 기본방향

(재정전망) 수입·지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

(투자계획)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

(대상사업) 세부사업 전체 「단, 총사업비 20억원이상(행사성 사업은 3억원 이상) 사업은 행정자치부 제출됨」

□ 수립절차

행정자치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마련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 	'15년 8월
지방자치단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부사업조사서 입력 * 시스템 입력 사항은 지방재정정보화사업단과 협의 	8~9월
지방자치단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	9월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* 국고보조사업 가내시 확정(10월 중순) 	9~10월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방의회 및 행정자치부 제출 	11월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 작성 및 의회제출(변경사항 발생시) 	'16. 1~12월
행정자치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 	'16. 1~2월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기지방재정계획 관계부처 협의 	2월
행정자치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무회의 보고 • 중앙부처·자치단체 송부 	3월

3 계획대상 및 작성기준

- **계획기간** : 「2016~2020년」 5년간 연동화계획
- **계획대상** :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기금
- **작성기준**
 - ('16년도)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'15년도 최종 예산을 기초로 작성
 -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의 예산규모(최종예산안 기준)와 의회에 제출한 예산규모(당초예산)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.
 - ('17년도이후) '16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초로 지역내 성장률·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
 - 변동요인이 없는 사업은 가급적 「2015~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」 상 투자계획을 유지하여 작성
 - 「2015~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」 수립이후 법령 제·개정, 국고보조사업 수요조정 등이 있거나 변동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, 투자계획도 조정하여 반영

4 2016~2020년 수립기준 변경사항

- **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구분 추가**
 - 작성근거 :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항 제6호
 -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추가
 - 의무지출 :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 지출,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.
 - 재량지출 : 의무지출외의 모든 지출
 - * 국가는 2012 ~ 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부터 작성하였음.

□ 지역통합재정통계 추가

- 작성근거 :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항 제7호
-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기금, 지방공기업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통합한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의 전망